

미국의 제조물책임(PL)제도 운영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ma@esak.or.kr

1. 서 언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에서 오늘날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여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의 주요교역 대상국은 예외없이 거의 모두가 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제도는 각 나라마다 그 풍습과 토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화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비람직하게는 PL법의 국제적이고 통일적인 적용문제만 남아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누적된 판례의 발전과 그 축적에 의하여 형성되어 진전되어 왔다.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추이는 과실책임을 시발로 해서 보증책임을 거쳐 무과실 엄격책임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제조물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엄격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미국에서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채택한 획기적인 원칙이다.

그 후 미국에서 엄격책임이 일반화 되어 채택되면서, 그 결과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이러

한 상황을 초래된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계없는 저렴한 소송제기비용, 허다한 변호사의 존재, 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일반 시민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이 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배심원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 PL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풍조가 일반대중의 국민생활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우대시키는 관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제조자와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 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세차게 제기되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제조물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었고, 유럽 각 국에서는 EC지침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이 다투어 제정되는 과도기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제조물책임의 입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되었고, 만사지탄이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에 드디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PL법은 정당 학재

법조계 산업자 소비지단체 노동계 등의 압론을 박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것들을 본(本)을 따서 관련 정부 부처와 일체가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드디어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미국헌법

미국헌법(美國憲法)이란 미국의 성문헌법을 말한다. 미국헌법은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영국식민지의 지배로부터 독립혁명의 소산이며, 오늘날의 미합중국은 1787년 영령식민지 13주로 이루어지는 연방으로서 발족한 것이다. 이미 독립선언을 한 1776년부터 1780년에 걸쳐,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계약이론을 사상적 기초로 한 주 헌법이 성립되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이들의 여러 주를 통합한 통일적인 성격의 안정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 주의 요망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1777년 이른바 "연합규약"이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워싱턴을 선출하고, 이 후 연방헌법의 정비와 수정에 노력하였는데, 최초의 수정 10개조는 1892년에 증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른바 권리장전의 포함이다.

Bill of rights는 만권조례 곧 권리장전(章典)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보장에 관한 입법적 선언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유명한 것은 다음의 2가지이다. 영국에서는 1689년 William III 세와 Mary II 세 치세 원년에 제정된 것(the Bill of Rights),

미국에서는 헌법수정 1-10조를 말한다. 그 후의 수정조항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전쟁 후에 증보된 노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 13조 내지 15조이며, 이의 영향으로 오늘날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보장의 기본적 부분이 거의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성문화되었다.

미국헌법의 특징으로서 50주로 이루어지는 연방제와 권력분립주의 및 위헌법률심사제와 같은 사법권우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제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중국과 각 주의 권한분배가 헌법에 의하여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의 이원성이 미국법체계의 큰 틀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이원적인 계통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권력분립제는 대통령과 연방의회 및 연방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분립체제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대통령은 4년 임기제로 정착되어 있는데, 국민의 선거대표인단에 의하여 소위 간접선거로서 국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선출되며,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부간에는 영국 의원내각제의 긴밀한 협동관계와는 달리 그 분립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또 국회를 구성하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중에서, 후자는 인구에 따라 각주에서 선출된 위원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전자가 각주에서 주의 대표로서 2명씩 선출되는 임기 2년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연방제의 특색에 관계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헌법의 특색 중 이른바 사법권의 우위는

1803년의 마베리 대 매다슨(Marbury V. Madison)에 있어서 연방최고법원장 마셜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법상의 원칙으로, 이것은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보아 위헌이나 합헌이나를 심사하고 판정하는 권한은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독점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위헌심사제는 법원이 사법권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내리는 판단에 그칠 뿐이지, 이른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원과는 별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헌법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심사는 일반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법률의 위헌심사는 법원과는 별개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3. 제조물 책임(製造物責任)의 개관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자가 제조한 제조물이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여 제조자책임이라고도 칭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제조물의 원료나 부품을 제조자에게 공급한 제3자나 그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한 중간상인 등의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공급자책임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4. 제조물 책임법의 특징

불문법(不文法 : the common law)이란 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정규의 제정절차를 거친 이른바 성문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관습법이 대표적이고 판례법이나 조리(條理)도 이에 속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written law)을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불문법이 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PL)법은 이러한 불문법계통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것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는 꽤 오래되어 장장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여하튼 불문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인정되는 법인데, 관례의 누적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의 제조물책임법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그리고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자 등에게는 과도한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미국 제조물책임법리의 발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전통적인 영국의 판례법이 유지되어 왔고 제조물책임(PL)의 판례에 있어서도 판례법이 유지되어 발전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은 4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다.

1) 제1과정

1842년 계약관계가 중심이 되었던 영국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에서부터 1916년 MacPherson v. Buic Motor Co.사건의 판결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되었다. 이의 법적 정의는 생산의 극대화라는 고전주의 경제학과의 지배적 경제논리를 보지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제조물이나 원천적으로 위험한 제조물은 즉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2) 제2과정

1916년 MacPherson 사건이후 1965년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정까지의 단계이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미국법률협회(ALI)가 1965년에 발표한 과거의 불법행위법의 판례로서 도입된 법률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권위를 인정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으로 판결이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제조물의 범람과 함께 복잡다단한

유통과정에서 계약당사자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순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물건에 성질상 제조상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 확실하다면 그 물건은 분명히 위험한 제조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확산되어,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결함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키기에 이르렀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른바 이러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이 후 판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후 1963년에 발생한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의 Tranyor 판사의 엄격책임론을 기초로 한 무과실 법리의 판결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엄격책임의 법리는 결함있는 제품이나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제조물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함이 없고 외관상 명백한 위험이 없는 제품에 의한 피해는 제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엄격 책임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제품에 결함이 불합리하게 위험한 제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엄격책임의 법리가 절대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엄격책임이 제품 전체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엄격책임은 주로 제조과정상의 결함에 연유한 손해,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야기된 손해, 지시나 경고상에 의한 손해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격책임은 결함있는 제품

이 상품이 아닌 경우나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보아 적용대상의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를 야기시킨 제품이 상업적인 유통에 놓이지 않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용을 위해 일반인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나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정과 조직력 그리고 손실의 분산능력이 비등한 대기업끼리의 거래 관계에서는 엄격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격책임의 목적은 합없는 사용자 곧 무력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책임의 요건을 만족하여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구입자가 요구한 특정의 사양에 의해 제조된 경우에는 엄격책임의 적용은 극히 제한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감면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엄격책임의 근거는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불합리성의 제거에 있는 것이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조물의 기술적 또는 과학적 특성에 관한 많은 정보가 제조업자 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제조업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조정자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소정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응분의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분산기능을 수행하기에 최적이 책임자이므로 당연히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모순이 없으며 법사회학적인 견지에서도 합리적이다. 또 제조업자는 엄격책임에 의한 손실을 담보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제품의 제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 또한 손해방지기능의 자극제가 되어 크게 작용하게 된다.

결국 Greenman 전동공구 사건의 판결은 많은 반향을 일으켜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대한 제품에도인의 특별책임을 규정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B는 동산 매도인에 의한 소비자의 부실표시에 관련된 것이다.

3) 제3과정

1965년의 Greenman 판결이후 1997년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작성되기까지 엄격책임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미국내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었다. 그 적용대상도 비단 제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에 의한 피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현재는 대륙법계에서 많은 이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전기, 제작물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판례를 확립하여 놓고 있다.

부실한 표시에 대한 엄격책임과 함께 피해소비자 구제의 천국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수거부가 빈발하여 제조업자의 피해사례는 연방차원의 불법행위법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손해배상 방지기능에서 사고피해 방지기능으로의 대전환을 시사하였다.

2차에 걸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보험의 인수거부는 끝내는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대책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현행의 제조물책임의 환경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구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힘들어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급선무임을 역설하였다. 여기에다가 특히 재판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비책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소비자의 용이한 구제책과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헨더슨 교수와 트위스키 교수에 의한 연구팀은 1992년부터 기존의 판례와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를 대폭적으로 수정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를 기초안을 작성하여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한 수정작업을 거쳐서, 드디어 1997년 5월 20일에 확정하였다.

4) 제4과정

제3차 리스테인먼트 확정이후의 시기이며 제3차 리스테인먼트는 전체 4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판매시의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제조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책임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수한 제조물 또는 제조물시장에 적용되는 책임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사유로 인한 상업적 판매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매도시 부실표시 및 매도후의 경고 및 회수에 대한 책임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부터 11조가 이에 해당된다. 제3장은 승계자와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의 규정으로 제12조부터 14조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은 제15조부터 21조까지로 인과관계와 정의의 일반적인 적용 규정이다. 제3차 리스테인먼트의 주요한 특징은 과실책임에의 복귀라 할 수 있다. 이 제3차 리스테인먼트를 확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린 까닭은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나 경고의 이른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함리적인 대체 설계라는 과실책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 그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과실책임에의 복귀는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6.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제조물책임)

제1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1절 제품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1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제품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

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a)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b)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c)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제품이 된다.

제3조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다음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은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

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 사고가 통상 제품결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일 것

(b) 당해사건에 있어서, 사고가 오로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품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제4조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실제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경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a)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b)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품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적절하게 고려된다. 다만, 법률문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결함의 인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절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5조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부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의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b) (1) 부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부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2) 당해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제품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을 있게 한 원인이 되고,

(3) 당해 제품결함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6조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a)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의료제공자의 처방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 본조 (a)항에서 있어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결함이 있다.

(1)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제2조 (c)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3) 제2조 (d)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부적절한 표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c)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초래할 예상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예상가능한 치료의 이익보다 훨씬 크고, 그와 같은 예상가능한 위험과 치료상의 이익을 모두 알고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공자라면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를 어떠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d) 예상가능한 피해의 위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1)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처방자 및 기타 의료제공자

(2) 의료제공자가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환자

(e)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는 경우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공급시점 혹은 그 이전에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배풀지 않았고 그것이 인적 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제7조 결함식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a)항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피해를 발생시킨 성분이 결함이 된다.

제8조 결함중고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판매한 사람이 합리적인 주의를 배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결함이 생기는 경우

(b) 당해 결함이 제2조 (a)항에 의한 제조상의 결함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추정되는 결함에 해당되고 또한 판매자에 의한 당해 제품의 판매가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그 중고품은 신제품과 비교하여 그 이상으로 결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경우

(c) 당해 중고품의 판매자 또는 연쇄유통 과정에 있어서 파승계인(선행판매자)에 의하여 再製造된 중고품에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

(d) 제4조에 의하여 중고품에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중고품으로부터 결함이 생긴 경우 중고품이란 본 조에서 말하는 판매 또는 공급시점 이전에 연쇄유통과정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되고 또한 일정한 기간 사용되었던 제품을 말한다.

제2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의거하지 않는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9조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매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과실로 또는 선의로 당해 제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부실표시한 사람은 당해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a)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제품의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후에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1) 판매자가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2)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3)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경고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4)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제11조 판매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 후에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1)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 정부의 명령이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회수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거나,

(2) (1)호에 의한 회수 요구 없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b)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당해 제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승계자 및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

제12조 파승계(선행)자가 상업적으로 판매한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승계자의 책임

피승계회사 또는 단체의 재산을 취득한 승계회사 또는 단체는 그 재산취득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자가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a) 승계자가 그 책임을 인수한다는 합의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
- (b) 피승계자의 채무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기적인 재산이전의 결과인 경우
- (c) 피승계자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을 구하는 경우
- (d) 승계자가 피승계자를 계속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제13조 승계자 자신이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승계자의 책임

(a)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계회사 또는 단체의 재산을 취득한 승계회사 또는 단체는 제12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승계자가 판매 또는 공급한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 승계자가 당해 제품의 보수 및 수리업무를 제공할 것을 인수 또는 동의한 경우 혹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승계자에게 가져다 줄 피승계자의 제품 구입자와 동일한 관계를 맺는 경우

(2)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경고를 제공하는 경우

(b)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 (1) 승계사업자가 당해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2)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 (3)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경고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 (4)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제14조 他人이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제품으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당해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4장 일반적 적용 규정

제1절 인과관계

제15조 제품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

제품의 결함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의 원인인지 여부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과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6조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증대된 피해

(a) 상업적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다른 원인으로부 터 생긴 피해를 넘어서 원고의 피해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자는 증대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임이 입증된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은 당해 제품의 결함만에 의하여 생긴 증대된 피해로 한정된다.

(c)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b)항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 및 다른 원인으로 야기된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d) (b)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c)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결함제품의 판매자는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 법리에 의하여 결정된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을 진다.

제2절 적극적 항변

제17조 원고, 제품결함의 판매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분배

(a) 원고의 행위와 제품의 결함이 결합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또한 원고의 행위가 적절한 주의수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은 경감될 수 있다.

(b) (a)항에 의한 경감의 방법 및 정도 그리고 다수의 피고간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분배는 책임분배를 정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인적 피해의 제조물책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면책, 책임제한, 권리포기 및 그 밖의 계약상의 면책조항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면책 및 제한, 제품구입자에 의한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상의 유사한 면책조항은, 그러한 면책약속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유효한 인적 피해에 관한 신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청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제3절 정의

제19조 제품의 정의

본 리스테인먼트에 있어서,

(a) 제품이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상업적으로 공급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전기 등은 그 공급 및 사용의 관계가 본 리스테인먼트상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유형의 동산의 공급 및 사용과 아주 유사한 경우에는 제품이 된다.

(b)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더라도 제품이 아니다.

(c)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은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더라도 본 리스테인먼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의 정의

본 리스테인먼트에 있어서,

(a)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사용, 소비 또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지는 재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된다. 상업적 제품판매자에는 제조자, 도매상 및 소매상이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 판매 이외의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사용, 소비 또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로서 타인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된다. 상업적 비판매제품 공급자에는 임대인, 기탁자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나 기타 상업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c)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또한 그 거래가 전체로서 또는 제품 부분이 (a) 또는 (b)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것으로 된다.

제21조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의 :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본 리스테인먼트에 있어서,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피해에 의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다.

(a)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

(b) 타인에게 생긴 피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때에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c) 결함 있는 제품 자체를 제외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피해

7. 제정법에 의한 발전

1) 제정법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곧 제정법(制定法)은 판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에 이르러 제정법도 많이 제정되었지만 보통법이 영국법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영국법은 로마법의 영향도 일부 받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 점에 있어서 유럽대륙의 법을 의미하는 대륙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보통법과 형평법(衡平法)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의 구 식민지에도 이어받게 되어 영미법은 일대 법계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 보증책임에 의한 발전

보증책임은 미국의 통일상법전의 매매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판례법주의를 고수하는 미국은 각 주마다 고유의 판례법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영국의 어음교환법, 동산매매법의 본(本)을 따서 1952년에 제정한 것이 통일상법전이다. 이 통일상법전이 성문화된 것은 1960년 Henningsen 판결이후인 1966년의 일이며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1997년 일부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현황이다.

보증책임은 결합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자인 원고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추궁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책임은 명시적 보증책임과 묵시적 보증책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묵시적 보증책임은 상품성에 대한 묵시의 보증과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이 있다. 보증책임은 계약당사자의 관계와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하자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통지기간의 불합리성이 큰 한계로 지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발전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운송회사의 트럭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에

운전사는 치료비 이외의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운전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 민법은 운전사의 사용자 곧 운송회사에 운전사와 부진정연대채무(不真正連帶債務)의 연대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인신손해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주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간단히 말해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되며, 이 손해 배상 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제1차 보험위기를 맞은 미국의 상무부(USTR)는 연방차원의 통일된 제조물 책임법의 유도지표로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 MUPLA)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나 각주의 채택이 미비하여서 통일적인 성격으로까지 발전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이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의 성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제품의 결함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결함을 입증하면,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제품이 불합리하게 불안정한 사실의 입증 필요하였다. 그러나 판매자에게는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

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가만을 판단하는 과실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UPLA)은 비록 미국 전지역에서의 확산과 채택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주가 판례상 MUPLA를 인용하거나 주 차원의 제정법에 일부를 채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그 의의와 영향력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

8. 소송제도의 특징

1) 다수의 변호사

미국의 법과대학(law school)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는 매년 약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약 100만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성공보수제도

미국의 변호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성공보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개시시 원고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화해나 승소시 피고로부터 수취한 배상금의 30~50%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의뢰가 가능하므로 초기비용의 지출이라는 부담없이 소송제기가 항상 가능하다.

3) 염가의 소송비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이 소송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미분 100달러 전후가 된다. 따라서 거대한 금액의 소송에도 개시에 약간의 소송비용으로 소송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4) 배심제도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중에서 취사선택된 배심원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쌍방의 주장이나 증언을 듣고 판사로부터의 법률적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선정하고 합의하여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결(評決)이란 원래 합의제 법원의 법관이 모여서 재판내용을 결정짓기 위해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명 합의라고도 한다.

5) 개시절차(Discovery)

디스커버리극(劇)이나 시(詩) 따위의 줄거리의 전개를 지칭하고, 법률에서는 논거로 하는 사실이나 문서의 강제적인 개시(開示)나 발표(disclosure)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판전 원고와 피고 쌍방이 갖고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증거개시절차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기의 주장에 필요한 정황이나 증거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6) 징벌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 punitive damages)은,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은 손해의 전보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

한 실제손해를 전보받은 것이 원칙이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수정하여 일부러 가해자의 손해를 악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기존의 손해의 전보(填補)를 훨씬 뛰어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반 평배심원들의 감정 때문에 기업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 되는 일이 자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이 훨씬 가중되므로 기업측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의 배상금과는 별도로 배심원의 판단 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그러나 그 인정 기준은 애매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이 부과되며 기업의 존망을 좌우한다.

7) 손해의 중복전보

이중 급부의 원칙(Collateral Source Rule)이 인정되어 원고가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다른 급부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공제없이 손해배상금의 이중수취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 정기적 배상

정기적 배상(Structured Settlements)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이다. 배상금액이 너무 높고 특히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는 PL보험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있

으므로 제조자의 자력에 의해 오직 현금(cash)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지불하고 싶어도 시계가 부족하여 일시에 지불하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배상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몇 회에 나누어 지불하는 이른바 할부지불(installments)을 허용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의 사정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어느 시기까지 지불완료하는 형태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길을 터놓았다.

9) 집단소송

집단소송(集團訴訟 : class action)은 많은 사람이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중 일부의 피해자나 전체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提起)하는 소송으로, 일명 집합대표(集合代表)소송이라고도 한다.

주로 공해, 결함상품, 가격의 위법적 인상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다수인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이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노동쟁의에서 대량의 처분자, 이를테면 집단해고 등이 나온 경우에도 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은 법률상의 호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다수인이 원고가 되는 공동소유의 대규모적인 형태의 것이다. 또는, 다수인 중에서 적당한 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원을 위해 소송을 시키는 이른바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와 유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야 할 때 그 가운데서 선출되어 전원에 갈음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이다. 이에 의하여 각자가 모두 소송하지 않으면 안될 번잡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소송이 단순화되고 편의가 있다.

아를테면 미국의 살리콘젤 부작용 소송사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유방확대수술 후 가슴에 주입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터져서 체내에 누출된 살리콘 면역체계 파괴와 피부조직의 이상을 일으키는 피해가 여기저기서 미국내서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부터 사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FDA에도 제기되었고, 급기야는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해에 다우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였다. 피해자들은 제각기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였고 일부에서는 거액의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무려 약 1만 2,0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알라바마주 버밍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는 피고 중 다우코닝사, 브리스틀 마이어사 및 백스터 헬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 화해안(global settlement)을 마련하였다. 이 전세계 화해안은 몇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확정되었다. 피해자들 중 이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화해안을 받아 들었다.

10) 연대책임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프포켓이론(Deep Pocket Theory)이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책임이란 2인 이상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양쪽 혹은 가해자 사이의 책임정도는 무관하게 어느 한쪽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금 전체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10%의 책임이 있는 갑(甲)과 90%의 책임이 있는 을(乙)이 공동가해자인 경우, 을에게서는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고 갑에게는 충분한 배상여력이 있다면, 갑은 책임분담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100%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에 갑은 을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책임분담 비율에 비해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면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하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책임법리는 특히 교통사고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의 경우일수록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통해 다시 이윤창출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한(Deep Pocket) 대기업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인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근거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은 간혹 전혀 책임이 없는데도 연

루가 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고액의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일면 역을한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은 판례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통일상법전이라는 제정법에 의한 보증책임의 양측으로 하여 결합 제조물에 대한 피해자 구제의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법의 운용과 함께 절차법으로서 다른 대륙법과는 특이한 소송제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결 언

이와 같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PL소송의 남발,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액, 수없이 많은 사소한 예상밖의 자디잔 소송사건들, 고액에 대한 정기적 분할배상, 집단소송 등 여타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법리의 적용은 미국의 사회에서 특정한 산업이 무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일종의 국민들의 일치된 사회여건을 형성하여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과잉보호라는 중심에서 조정내지 재정비하고자 하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특수법리가 그

나마 그런데로 미국에서 정착된 것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모든 사회 구성구석에 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정돈된 사회 분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정착된데다가 초현대적인 유통체계의 확립,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형성 그리고 다수의 변호사 등이 작용하여 소비자천국을 일구어 낸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정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초중심의 지상낙원을 만든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이 동전과 같이 양면이 있듯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라는 측면이외에 기업활동에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최근에는 주(州)별로 다양한 보완장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그동안 값비싼 교훈을 통해 통렬한 경험을 맛본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토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를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보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향후 많은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미국내에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